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583

발의연월일: 2024. 11. 14.

발 의 자:서삼석・박홍배・정을호

이개호 • 문금주 • 박수현

김원이 • 위성곤 • 이병진

문대림 · 소병훈 · 정준호

이재명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숲길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산림청장이 수립한 숲길 조성·관리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차별 숲길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여 조성된 숲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포괄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2022년 성인(만 19세~79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매월 1차례 이상 등산이나 트레킹을 즐기는 사람이 전체인구의 78%인 약 3,229만명으로 건강과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등산・트레킹 인구의 증가로 나타났으나 늘어나는 이용자에 비하여 숲길관리청의 숲길 관리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숲길 관리의무를 보다 구체화하여 숲길을 조성한 숲길관리청은 해당 숲길을 관리하는 사람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로 하여금 숲길의 안전상태 확인, 위험요인의 제거 및 안전·편의 시설의점검·수리 등 이용자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숲길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법률 제 호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숲길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숲길관리원을 둘 수 있다.
- 1. 숲길의 안전상태 확인 및 위험요인 제거
- 2. 숲길의 훼손 · 오염 방지 및 계도
- 3. 숲길 안전 편의 시설의 점검 및 보수
- 4. 제25조의3에 따른 차마의 숲길 진입금지 등 안전사고 예방
- 5. 제28조에 따른 산악구조대의 활동 지원
- 6. 그 밖에 숲길의 보전 및 이용자의 안전·편의 증진에 필요한 활 동
- ③ 숲길관리청은 숲길관리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숲길관리원의 자격, 고용방법, 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 축산식품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2(숲길의 운영·관리) (생 략) <u><신 설></u>	제23조의2(숲길의 운영·관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숲길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숲길관리원을 둘 수 있다. 1. 숲길의 안전상태 확인 및 위 험요인 제거 2. 숲길의 훼손·오염 방지 및
<u><신 설></u>	2. 표절 에는 도요 8 주 주 계도 3. 숲길 안전・편의 시설의 점 검 및 보수 4. 제25조의3에 따른 차마의 숲 길 진입금지 등 안전사고 예 방 5. 제28조에 따른 산악구조대의 활동 지원 6. 그 밖에 숲길의 보전 및 이 용자의 안전・편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③ 숲길관리청은 숲길관리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
	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u><신 설></u>	④ 숲길관리원의 자격, 고용방
	법, 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